

준법지원파트	경 영	분류기호 BA - 00 - 15 1/4
전 사 공 통		제 정 2020 . 08 . 01 .
무림 윤리행동지침		

무림 윤리행동지침

제 1 절 윤리행동지침의 목적

본 행동지침은 무림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임직원의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용어의 정의

1. 금전 또는 금품이라 함은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의 일체를 의미한다.
2. 향응 또는 접대 라 함은 음식 및 주류 제공, 스포츠, 문화 등의 수혜를 의미한다.
3. 편의 라 함은 금전, 향응 제공을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영리목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 상대방을 일컫는다.

제 3 절 금품 수수 등 행위 금지

제 1 조 금전 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 제공 시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금전을 반환 못한 경우,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앞으로 송금
 - ✓ 윤리담당부서에 금전 반환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제 2 조 선물 수수

1. 이해관계자가 선물 제공 시 정중하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단,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판촉물은 선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임직원 자택으로 선물이 배송 되었거나, 선물 수령 즉시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수령한 선물과 해당 사실을 전달토록 한다.
3. 수수한 선물에 대한 정확한 시가 환산이 어려울 경우, 윤리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제 3 조 경조금

1.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경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 수령 행위는 허용된다
 - ✓ 경조금 : 본인 포함한 직계가족 경조사에 한해 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 이하
 - ✓ 경조 선물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선물(돌반지 1돈 한도)
 - ✓ 진급 및 영전 등 축하의 의미로 제공된 화환
2.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동료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 4 조 회식 비용 등의 전가행위 금지

1.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서 회식 등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이해관계자에서 비용을 계산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이미 계산을 마치고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향응 및 접대

1.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건전한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접대를 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는 인당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업무협조를 위한 모임이 금지된 접대 행위(유흥업소, 사행성 도박장 등)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승인한 공식적인 행사 또는 부서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 6 조 편의제공

1.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숙식, 차량 운전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제공된 편의 내용이 관습상 허용되는 수준이며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용에 편승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 외의 경우 편의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 7 조 협찬/찬조 제공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2.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보하되, 찬조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업무 연관성이 있고 회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금전대차, 자산거래 등 행위 금지

1.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채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9 조 취업 청탁 등 행위 금지

1.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고용 주선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속 부서장 및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주식 취득 등

1.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회사 주식의 취득 및 보유는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후 즉시 처분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미 취득한 주식은 윤리담당부서에 고지 후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절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제 1 조 공정한 기회 부여**

특정 회사를 선정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한다.

- ✓ 상당한 이유없이, 거래 지역과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 ✓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또는 거래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견적 평가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제 2 조 부당행위 금지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되, 아래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된다.

- ✓ 계약기간 도중 상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정 회사에게 혜택을 주고자 염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
- ✓ 업무상 과실을 숨기거나 줄이고자 이해관계자에게 계약 외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
- ✓ 경쟁업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 등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 하청업체 및 거래처 직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행위

제 5 절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등

1.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적 이용을 금지하며, 사적 이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다른 곳에 전용하는 행위 등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4.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한 경비에 한해 사용을 허락하며 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5. 법인카드는 퇴폐업소 출입 및 사행성 오락실 등 비용 지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